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주민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상 19세 이상 재외국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 9.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14. 12. 31.)

구 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2,443 명
주 민 수	110,916 명
외국인 수	707 명
재외국민 수	820 명